

헬스케어3.0센터운영위원회규정

제정 : 2020.03.01

개정 : 2021.12.0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헬스케어3.0센터규정 제5조에 따라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위원회는 헬스케어3.0센터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고 한다)라 한다.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4인 내외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

② 위원은 센터장 추천과 산학협력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제4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회의) ①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6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1. 헬스케어3.0센터 발전에 관한 사항
2. 헬스케어3.0센터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
3. 기타 헬스케어3.0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7조(간사)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간사 1인을 지정할 수 있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회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회칙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